

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[시행 2021. 12. 30.] [법률 제17810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 제정·개정문 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,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·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,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시·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,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·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 전체 제정·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20년 12월 2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진영

● 법률 제17810호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, "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를 "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

을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,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급식소의 등록)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시정명령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·판매하는 자

2.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

제2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식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공포 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